

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개정 관련 QnA [배포용]

1. 긴급수급조정조치 개정 배경은?

- 국내 마스크 산업의 성장으로 생산량이 꾸준히 증가하고, 가격이 안정세를 유지하는 등 시장기능을 회복함에 따라 내수 시장을 활성화하고 해외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.

2. 개정고시 주요내용은 ?

- (마스크 수출 규제 폐지) 의약외품 마스크(보건용, 수술용, 비말차단용) 종류, 수출주체, 수량에 상관없이 수출 가능합니다.
- (판매업체 신고 등 폐지) 동일 판매처에 같은 날 3천개 이상 판매시 사후 신고 및 20만개 이상 판매시 사전 승인 의무가 삭제됩니다.

3. 시행일 및 유효기간은 ?

-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(고시)는 2020.10.23. 부터 시행되며,
-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 부칙 제2조에 따라 이번 긴급수급조정조치의 유효기간은 2020.12.11.까지입니다.

※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

부 칙 <제2020-56호, 2020.7.10.>

제2조(유효기간) 이 고시는 2020년 12월 1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

4. 생산업자의 신고의무는 유지 되는지?

- 마스크 생산동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생산업자의 생산량·출하량 신고제는 유지됩니다.
- 따라서, 당일 생산실적 등은 종전과 같이 다음날 낮 12시까지 매일 신고(주말 포함) 의무가 있습니다. * 「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」 제3조

5.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른 생산업자의 생산량 신고 방법 (현행과 동일)

<생산실적 등 신고>

- 신고대상 : 마스크 생산업자가 생산한 생산량, 수출량, 국내 출고량, 재고량 등
- 신고방법 : 당일 생산실적을 다음날 낮 12시까지 '의약품안전나라(<http://nedrug.mfds.go.kr>) 마스크 생산판매실적 신고시스템'으로 신고
- * 당일 생산량 산정기준 : 당일 0시부터 23시59분까지 생산한 수량
- 1일 생산량은 주문자 생산분(OEM) 등을 포함한 해당 업체에서 생산한 전체 마스크 수량으로 산정

<생산 전망 신고>

- 신고 대상 : 마스크 생산업자의 향후 4주간 주단위 생산계획
- 신고방법 : 향후 4주간 주단위 생산계획을 매주 금요일 낮 12시까지 '의약품안전나라(<http://nedrug.mfds.go.kr>) 마스크 생산판매실적 신고시스템'으로 신고